

# Customs Focus

이주의  
초점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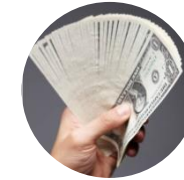
민원  
사례

기타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3길 33 (성수동 2가 6층)

## contents



01  
이주의 초점



02  
관세 무역 NEWS



03  
개정 법령



04  
민원 사례



05  
기타

# contents



## 이주의 초점

1. 다가온 디지털 화폐 시대, 현금 사라질까?



## 관세·무역 NEWS

2.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 올 말까지 '중소기업 70%·중견기업 50%'로 확대
3. 최빈국 '앙골라' 특혜관세 적용기한 '2024년 2월 11일까지' 3년 연장
4. 정부, 中企 FTA 활용사업에 119억원 투입한다
5.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LG 스마트폰, 차기 주력 사업은 '자동차 전기장치 사업'
6. 중국産 절임 배추 위생 논란, 식약처 "안전관리 강화"
7. 산업부,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종합 컨설팅' 대상 기업 모집



## 개정법령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9.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민원사례

10. 할인된 가격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 관련 질의
11. 한·인도 FTA 양허품목 적용 여부 관련 질의



## 기타

12. 2021년 조직개편으로 달라지는 세관 업무 안내

Cover

## 다가온 디지털 화폐 시대, 현금 사라질까? - I

이주의  
초점

각국 중앙은행 'CBDC' 도입 초읽기 ... '사생활 침해·금융 혼란' 등 우려

코로나19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자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 등 가상화폐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데이터 연결성, 유동성 및 저장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 전 세계에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에 관심이 늘며, 디지털 결제 및 화폐시장이 본격적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세·무역  
NEWS

비트코인 등 발행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민간 가상화폐를 두고 이를 화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 각국 중앙은행은 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정  
법령

◆ '비트코인', "안전성 우려 ... 화폐로서 기능 어려워"

가상화폐 중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단연 '비트코인'일 것이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 실물화폐는 아니지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 결제할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키', 카카오의 '초코' 등이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카카오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카카오에서 가상화폐(초코)를 발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비트코인의 경우 발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비트코인의 경우 특정 회사 또는 개인이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에 분산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거래하고, 현금화하는 모두가 비트코인 발행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비트코인을 누가 발행하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가 실물화폐와 달라 실체가 없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화폐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타

Cover

## 다가온 디지털 화폐 시대, 현금 사라질까? - II

이주의  
초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화폐단위 및 발행 규모는 발행기관이 독자적으로 정하며 교환가치가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법정 통화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법정 통화인 CBDC와 달리 통화정책 및 무역수지 흑자와 같은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보증하는 'CBDC'

이에 주요국은 각국 중앙은행 주도 하에 'CBDC(디지털 화폐)' 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행·보증하는 전자화폐로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수요 변화에 따라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일 것이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

KOTRA는 CBDC의 이점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 구현, ▲금융포용성 및 유동성 확대, ▲국가 간 결제 시스템 개선 등을 꼽았다.

민원  
사례

먼저 기존에 사용하던 통화가 디지털화돼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 관리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거래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목적에 따라 이자 지급, 보유 한도 설정, 이용 시간의 조절 또한 가능해 현금흐름을 더욱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어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인·기업의 필요에 부합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이용 기회가 확대된다. 현금통화는 금리 하락, 경기 위축, 탈세 등의 목적으로 금고에 보관돼 통화증발을 유발하기도 하나, CBDC는 이와 같은 유동성 함정을 타계할 수 있다.

기타

Cover

## 다가온 디지털 화폐 시대, 현금 사라질까? - III

이주의  
초점

아울러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개선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 간 거래에 사용되는 도매용 CBDC는 국경 간 거래 시, 상대방 신용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현재 국경 간 거래는 중앙은행의 즉시 결제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데, 결제 시간상의 차이를 발생시켜 신용 리스크를 초래한다. CBDC의 경우 365일, 24시간 결제가 가능하고, 결제 과정이 간소화돼 처리 속도가 향상되므로 상대방의 신용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 ◆ 각국 CBDC 연구·개발 돌입, 가장 발 빠른 '중국'

관세·무역  
NEWS

각국은 CBDC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 조사 결과 중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등 전 세계 65개국 중앙은행 중 86%가 CBDC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법령

그중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인민은행법' 개정을 통해 현금에 전자결제 기능을 결합한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화폐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부터 선전·쑤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에게 디지털 위안화 실험을 진행 중에 있으며,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도 디지털 위안화 사용 시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민원  
사례

참고로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로, 은행 시스템을 기초로 은행 계좌와 이완결합된 기능을 갖고 있으며, 현물화폐와 등가의 가치를 지니고, 법적으로 보장된다.

기타

Cover

## 다가온 디지털 화폐 시대, 현금 사라질까? - IV

이주의  
초점

중국정부는 향후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의 범위를 넓혀 세계 최초로 CBDC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전문가들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디지털 위안화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사생활·금융 혼란에 美·EU는 신중 ... 인도는 '비트코인'부터 강력 제재

관세·무역  
NEWS

CBDC 도입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던 미국과 유럽 역시 도입 검토에 나섰지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CBDC를 연구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화폐 발행에 따른 사회적 이익은 물론 리스크도 함께 따져보기 위함이다.

개정  
법령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해 10월 IMF 연차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CBDC 도입과 관련해 "먼저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CBDC 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원  
사례

유럽중앙은행(ECB)은 올해 초 중 CBDC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양의 디지털 화폐를 담는 바우처의 상용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화폐를 쓰는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바우처가 활용될 수 있어서다.

기타

Cover

## 다가온 디지털 화폐 시대, 현금 사라질까? - V

이주의  
초점

영국 중앙은행은 CBDC 발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일본은행의 경우 올해 디지털 화폐 발행 타당성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주요국들의 행보가 중국에 비해 미진한 것은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인도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는 물론 보유도 불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무역  
NEWS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가상화폐의 채굴과 발행, 거래와 더불어 보유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에 최대 6개월의 처분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는 가상화폐 보유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개정  
법령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법안이 비트코인 등 민간의 가상화폐는 금지하면서 공식 디지털 화폐를 구축하려는 인도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  
사례

◆ 한국은행, 'CBDC' 적극 검토 ... 은행들, CBDC 도입 앞두고 플랫폼 구축 경쟁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 CBDC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올해 안에 CBDC 관련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타

Cover

## 다가온 디지털 화폐 시대, 현금 사라질까? - VI

이주의  
초점

이는 디지털과 블록체인 기술을 앞세운 비(非)현금화 물결이 글로벌 대세로 굳어지자 통화당국 차원의 공식 대응에 나선 셈이다.

또 올 하반기 중 실증 테스트도 시작할 예정이며, CBDC 발행을 위한 기술적 검토와 함께 CBDC 발행 권한, 법화성, 금융기관 및 민간과의 법률관계 등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무역  
NEWS

이처럼 한국은행이 CBDC 도입에 발행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은행들이 플랫폼 구축 경쟁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3월 8일 한국은행의 CBDC 발행을 대비해 LG CNS와 블록체인 기반 CBDC 플랫폼 시범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LG CNS와 2019년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화폐인 '마곡 페이'를 시범 운용했던 국민은행은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지갑 구현과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령

하나은행의 경우 한국은행의 CBDC 도입에 대비해 내부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며, NH농협은행도 CBDC 관련 시스템 구축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원  
사례

기타

출처 - CUSTRA



Cover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 올 말까지 '중소기업 70%·중견기업 50%'로 확대

이주의  
초점

관세환급가산금 산정 적용 이자율 '연 1.8% → 1.2%'로 인하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제조업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율을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은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확대됐다.

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2개년도(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하고, 관세환급가산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8%에서 연 1.2%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 등에 적용되는 관세감면율 확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관세환급가산금 등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을 3월 16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4]에 규정하고 있는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율을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이들 물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중견기업은 30%에서 50%로 각각 20%p씩 높였다.

이에 올해 말까지 세척기, 멸균기, 포장기, 골판지 제조기, 인쇄기 등 공장자동화물품 52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확대된 관세감면율을 적용 받는다(동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Cover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 올 말까지 '중소기업 70%·중견기업 50%'로 확대 - II

이주의  
초점

또한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경우 관세환급금 또는 과다환급액에 더하는 가산금 계산 시 적용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000분의 18(1.8%)에서 연 1,000분의 12(1.2%)로 인하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영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2개년도(2020~2021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했다.

관세·무역  
NEWS

이는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해짐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법령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제도로, 관광 부문 재투자 등을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액의 50%를 관광개발기금에 출연한다.

민원  
사례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공항 임대료 감면(2020년 3월~), ▲재고품 국내 판매 허용(2020년 4월~),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2020년 11월~), ▲출국 전 면세품 다회 발송 허용(2021년 1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기존 지원책에 특허수수료 절감까지 더해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타

Cover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 올 말까지 '중소기업 70%·중견기업 50%'로 확대 - III

이주의  
초점

아울러 국제무역기와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을 구분해 면세기준을 정했고, 국제무역선 승무원의 경우 항행(航行)기간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한다.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해 수입하는 물품은 미화 150달러까지,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이 휴대해 수입하는 물품은 미화 90~270달러까지로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90달러,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180달러, ▲3개월 이상인 경우 미화 270달러다.

아울러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 수입하는 술의 경우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은 3개월에 1회,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으로서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에 1회에 한해 관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정부 이외의 자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군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 정부용품 면세 적용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와 이를 확인·발급하는 주체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이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 포함)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른 통상품이 아님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 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입한다는 것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Cover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 올 말까지 '중소기업 70%·중견기업 50%'로 확대 - IV

이주의  
초점

이 외에도 조문상 주요 용어(▲기용품 → 항공기용품, ▲체납처분 → 압류·매각, ▲견품 → 견본품, ▲카나다 → 캐나다, ▲적하목록 → 적재 화물목록, ▲상용견품 → 상업용 견본품, ▲수하인 → 물품 수신인,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 → 종교단체의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를 정비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출처 - CUSTRA

Cover

## 최빈국 '앙골라' 특혜관세 적용시한 '2024년 2월 11일까지' 3년 연장 - I

이주의  
초점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최빈개발도상국(最貧開發途上國)인 앙골라의 특혜관세 적용시한이 2021년 2월 11일에서 2024년 2월 11일까지 3년 연장될 예정이다. 최빈개발도상국은 유엔 총회(UN General Assembly)가 3년마다 소득·인적자산·경제취약성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를 말한다.

관세·무역  
NEWS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안을 3월 16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국제연합(UN)이 앙골라에 대해 최빈개발도상국 적용시한을 연장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시한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령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민원  
사례

참고로 소득이 3개 연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그 이하일 경우 최빈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며, 국민의 영양섭취 정도, 유아사망률, 문맹률, 자연재해의 피해를 본 인구비중, 경제규모 등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재부 다자관세팀(전화 : 044-215-4467, FAX : 044-215-8077, 이메일 : [yoocho9078@korea.kr](mailto:yoocho9078@korea.kr))으로 연락하면 된다.

기타

Cover

# 최빈국 '앙골라' 특혜관세 적용시한 '2024년 2월 11일까지' 3년 연장 - II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의  
초점

## 【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 】

지역	국가
1. 아시아·오세아니아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캄보디아·미얀마·부탄·키리바시·라오스·네팔·투발루·솔로몬제도·예멘·동티모르
2. 아프리카	앙골라·베냉·부르키나파소·부룬디·중앙아프리카공화국·차드·코모로·지부티·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감비아·기니·기니비사우·레소토·라이베리아·마다가스카르·말라위·말리·모리타니·모잠비크·니제르·르완다·상투메프린시페·시에라리온·소말리아·수단·탄자니아·토고·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잠비아·세네갈·남수단
3. 아메리카	아이티

출처 - CUSTRA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 Cover 정부, 中企 FTA 활용사업에 119억원 투입한다 - I

FTA 활용사업 참여기업, 미참여기업보다 연 매출 4.3% ↑, 수출 9.6% ↑

이주의  
초점

정부의 FTA 활용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미참여기업보다 약 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율도 10%p 가량 높았다.

관세·무역  
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6일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 회의를 열고, 정부의 FTA 활용 지원정책 성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FTA 활용 지원정책 수요자인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RCEP 서명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령

정부는 10여년간 FTA 활용 지원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점검·평가해보고 코로나19 등 가속된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민원  
사례

분석 결과 중소·중견기업의 매출액과 수출을 증대시키고, 고용과 R&D 투입을 확대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들의 FTA 활용 역량(설문조사, 100점 만점)은 사업 지원 후 FTA 원산지 관리, 비관세장벽 및 사후검증 대응, 수출·통관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 이전보다 평균 19점 이상 향상됐다.

## 기타

Cover

## 정부, 中企 FTA 활용사업에 119억원 투입한다 - II

이주의  
초점

또 연평균 매출·수출 증가(2015~2019년) 측면에서는 FTA 활용사업 참여기업들이 미참여기업보다 각각 매출·수출증가율이 4.3%p와 9.6%p 높게 나타났고, 해당 기업의 재투자(R&D 등)도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구에서는 정부의 FTA 활용 지원정책의 성과들을 더욱 발전·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FTA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활용전략으로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데스크 등 선제적 출범, 비대면 컨설팅 사업 모델 개발, FTA 통합 플랫폼 기능 강화, 지역별 수출 활용률 설정 등이 제시됐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FTA를 활용해 글로벌 기업 경쟁력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올해 119억원의 FTA 활용 지원사업 예산을 이용해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

구체적으로 ▲新남방 지역에 해외센터 개소 및 FTA 종합지원센터 내 RCEP 지원체계 구축 등 FTA 활용 인프라 확충, ▲지역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특화 컨설팅 실시, ▲지역 타깃 업종과 수출활용률 목표 설정, ▲사업·센터 성과평가와 추적조사 도입 등 FTA 활용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다각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민원  
사례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에 양질의 서비스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과제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내부적으로 검토 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 제안된 FTA 활용 발전전략 중 주요 과제 】

이주의  
초점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구분	대응전략	세부 내용
환경 변화	통상환경 변화	FTA 확대에 따른 선제적 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데스크 등 선제적 출범
	코로나19·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 실시 (교육·컨설팅·홍보) ● 비대면 컨설팅 사업모델 개발 ● 성공사례 동영상 제작 및 산업부 통상·YouTube 채널 업로드
사업 관리	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	각 센터별 기능 재정비 ● 종합센터의 기획·관리·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한 조직 개편안 마련 ● 지원사업 효율화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 ● FTA 통합 플랫폼 기능 강화 (사업정보 공유,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원 등)
	지역 중심의 사업 지원	지역센터 및 인력운용 기준 마련 ● 지역센터 사업 지원 지침 개선 ● 상주 관세사 운용방안 마련
	기업 애로 발굴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 ● 수출 유관기관 협업 확대

【 제안된 FTA 활용 발전전략 중 주요 과제 】

구분	대응전략	세부 내용
서비스 質	지역별 편차	지원사업 평가관리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수출 활용률 설정</li> <li>●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사업평가 및 자문시스템 구축</li> </ul>
	수출 초보·영세기업 지원 강화	우수 지원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전문 인력 Pool 구축</li> <li>● 민간 관세법인 협업 체계 구축</li> <li>● 무역 전반 컨설팅 병행 유지</li> </ul>
사업평가·홍보	성과 확산 및 관리 강화	신규 지표 지속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년으로 활용 지원정책 지원기업 대상 재무성과 분석 실시(격년)</li> <li>- 지역센터 추적조사 도입</li> </ul>
	성과 홍보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략적 FTA 활용 지원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li> </ul>

Cover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LG 스마트폰, 차기 주력 사업은 '자동차 전기장치 사업' - I

이주의  
초점

LG, 이달 말 스마트폰 사업 철수 수순 밟을 듯

LG전자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스마트폰 사업 방향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를 이달 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매각, 규모 축소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사업 철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종 검토 결과는 LG전자(24일)와 LG(26일)의 주주총회가 마무리되는 이달 넷째 주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증권가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에 대한 예측을 꾸준히 쏟아내 왔다.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MC사업본부(Mobile Communications)가 최근 5년간 연평균 8,300억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며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  
법령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할 경우 적자가 획기적으로 줄어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기업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민원  
사례

그동안 스마트폰 사업에 투입되던 자금이 향할 곳으로는 LG전자의 5개 사업본부 중 자동차 전기장치 사업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Vehicle component Solutions)'가 지목되고 있다. 최근 친환경 구조로의 대전환이 이뤄지며 전기차 급성장 추세에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타

Cover

##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LG 스마트폰, 차기 주력 사업은 '자동차 전기장치 사업' - II

이주의  
초점

LG전자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VS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말에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와 1조원 규모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 합작사 설립을 발표하고 올 7월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은 모두 LG전자 VS사업본부 매출로 집계될 예정이다. 또한 3월 16일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록소프트와의 합작법인인 '알루토'를 출범해 차량에 IT를 결합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정보 전달 기능에 오락성을 더한 TV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예고했다.

관세·무역  
NEWS

이러한 LG전자의 알루토 출범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래차 시대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밑그림이 구체화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LG전자는 올 1월 "VS사업본부의 지난해 매출은 5조 8,000억원으로, 매년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VS본부의 지향점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동차 부품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사가 예측한 VS사업본부의 올해 연 매출은 신규 프로젝트 등에 힘입어 7조원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 LG전자의 차세대 먹거리 사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출처 - CUSTRA

Cover

## 중국産 절임 배추 위생 논란, 식약처 “안전관리 강화” - 1

이주의  
초점

흙탕물 속 알몸으로 배추 절이고 녹슨 포크레인으로 퍼 날라  
온라인 영상 퍼지며 네티즌 ‘경악’ ... 김치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최근 SNS에 올라온 중국 김치공장의 비위생적인 배추절임 공정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며 온라인이 들썩였다. 중국産 김치의 위생 상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커지면서 가정 및 식당의 중국産 김치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해당 영상은 한 남성이 흙탕물 속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고, 이를 녹이 손 포크레인으로 퍼 나르는 모습으로 국내외 네티즌은 다소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중국 세관당국 해관총서는 수출용 김치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중국産 음식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産 식품에 대해 현지 생산부터 통관·유통단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3월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기존에 통관 단계에서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 중국産 절임 배추와 김치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3월 12일부터는 통관 검사(관능, 표시)와 정밀 검사(보존료, 식중독균 검사 등)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Cover

## 중국産 절임 배추 위생 논란, 식약처 “안전관리 강화” - II

이주의  
초점

구체적으로 기존 기준·규격 이외에 장 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도 추가로 실시한다.

참고로 국내 기준·규격은 김치의 경우 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 등이며, 절임배추의 경우 세균수,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 등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무역  
NEWS

식약처는 또한 3월 22일부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중국에서 수입되는 김치와 다진 마늘, 고춧가루 등 원재료를 중심으로 유통 단계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김치 및 주원료 150여 건을 대상으로 식중독균·납·카드뮴·타르 색소·보존료·대장균군 등의 항목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다.

개정  
법령

식약처는 중국 측에 김치 등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소의 작업장 환경, 제조시설, 식품 취급 등에 대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도 전하며, 소비자의 우려를 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에 따른 검사결과도 소상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민원  
사례

식약처는 또한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출처 - CUSTRA

Cover

## 산업부,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종합 컨설팅' 대상 기업 모집 - I

이주의  
초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판정·증명·관리 등 정보화 지원을 위해 '2021년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종합 컨설팅' 대상 기업을 3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운용하는 중소기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증명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수출 협력업체 자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세·무역  
NEWS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업 규모를 확대해 230여개 수출기업군(수출기업+수출협력업체)에 대해 1개 업체당 최대 4,000만원(설치형 기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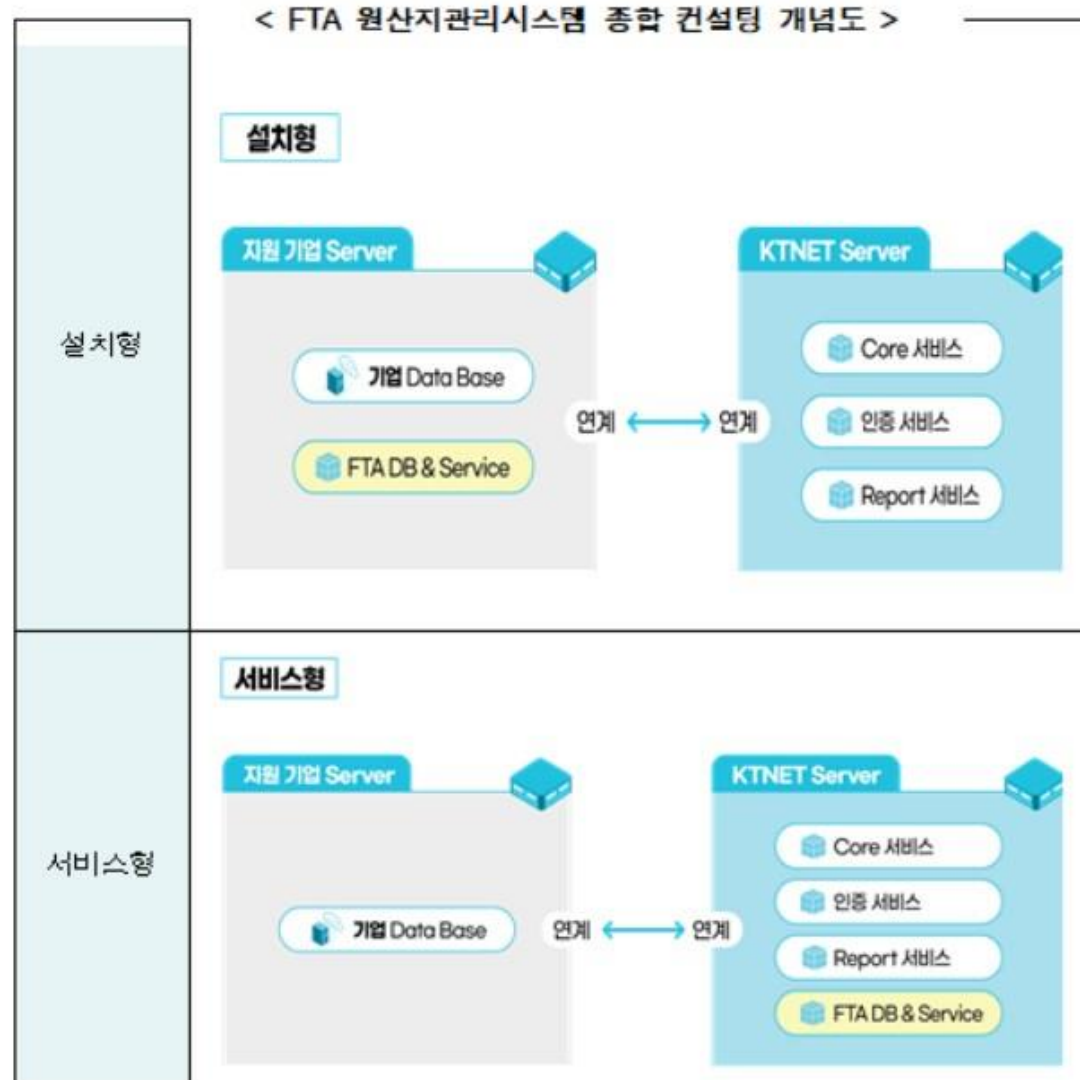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FTA 활용 효과가 큰 기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하며, 선정된 수출기업과 그 협력업체는 경험이 많은 관세사에게 수출품목 전체(원재료 포함)에 대한 품목분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업무 담당자는 FTA 기본 교육, 시스템 운영 교육 등 원산지 관리를 위한 필수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민원  
사례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여건에 따라 '설치형(기업 내 서버 사용)'과 '서비스형(공용서버)' 중에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4월 19일까지 신청(02-6000-2938, ftaplus@ktnet.co.kr)하면 된다.

기타



출처 - CUSTRA



Cove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 3. 16., 전부개정]

이주의  
초점

##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조약의 적용·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합의 결과 이행 중 법원판결 등과 충돌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상호합의 내용을 수락하고 진행 중인 불복쟁송을 취하하는 것을 요건으로 상호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와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서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와 작성범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출처 - 기획재정부

Cover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33호, 2021. 3. 16., 일부개정]

이주의  
초점

##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등에 관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고, 불필요하게 소요되는 송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하지 않도록 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에 근거가 되는 법령, 가산세의 종류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국세환급금통지서의 규정을 정리하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의 서식을 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

출처 — 기획재정부

기타

Cover

## 할인된 가격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 관련 질의 - 1

이주의  
초점

□ (질의)

∴ 1,000개 이상 구입 시 10% 할인을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거래가격도 10% 할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수량할인, 가격 할인 등)이 아닌 특정 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관세·무역  
NEWS

∴ 가입 시 발급되는 할인쿠폰·축하금, 일정 금액 이상 구입 시 제공되는 할인쿠폰 등 해외 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금액은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기존 거래로 적립 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 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 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 가격이 됩니다.

개정  
법령

∴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상거래상의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례별 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  
사례

- 대금 선불 : 선불에 따른 특별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가격을 인정함.
- 현금 할인 : 현금 지급에 따른 거래가격의 할인은 인정됨.
- 수량할인 : 다량의 물품을 구매해 대규모 수량할인을 받은 경우 실제로 허용된 모든 수량할인이 인정됨.
- 기존 거래에 관련된 채권을 상계하기 위한 할인 : 할인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에 할인된 만큼의 금액을 가산함. 예를 들어 이전 선적 물품에 하자가 발생해 클레임을 제기하고 이를 변상하기로 해서 차기 선적된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 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함.
- 비정상적인 할인(Abnormal Discount) 및 독점 판매 대리인에게 한정해 부여하는 특별 할인(Special Discount) : 이와 같은 할인이 특수관계, 조건 또는 사정, 사용상의 처분·제한, 계산할 수 없는 사후 귀속 이익 등 거래가격을 성립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경우 해당 할인된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없음.

출처 - CUSTRA

기타

Cover

## 할인된 가격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 관련 질의 - II

이주의  
초점

□ (답변)

∴ 문의한 내용은 일반적인 할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만, 받은 할인의 과세가격 적용 여부는 통상적인 할인인지, 특정 할인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인가 아닌가의 최종적인 판단은 통관(예정)지 세관장이 제출한 자료(계약서 등) 및 사실관계,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출처 - CUSTRA

Cover

## 한·인도 FTA 양허품목 적용 여부 관련 질의

이주의  
초점

□ (질의)

∴ 인도에서 HS Code 제9018.90-9090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해당 제품이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또 FTA 양허 품목은 어디서 확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세·무역  
NEWS

□ (답변)

∴ 문의한 물품이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한·인도 CEPA 양허품목으로 확인됩니다.

∴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수입 시 한·인도 CEPA 협정관세율(양허품목) 확인은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http://unipass.customs.go.kr/cli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법령

∴ 이와 관련해 양측 세율은 '관세청 FTA 포털 > FTA 자료실 > 협정별 세율 정보 > 수입 및 상대국 세율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기타

출처 - CUSTRA

## 조직개편으로 달라지는 세관 업무 안내

◇ 조직개편에 따라 UNI-PASS 시스템 상 통관·감시 업무처리부서의 '과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함께 첨부되어 있는 **[별첨 ①] '전자문서 총괄표'**와 항목별로 밑에 기재된 '▶ [별첨]' 자료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참고)**

※ 하단에 기재된 세관 외 세관의 업무변경 사항은 [별첨] 자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수출입신고 관련 업무

□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 관련 업무(신고 정정·취하, 요건확인 등)

구 분	개편 이전	개편 후	문의처
인천항	수입1과	○ (P/L) 통관정보과 ○ (심사·검사) 통관검사1과, 통관검사2과	☎ 032-452-3251
	수입2과	○ (심사·검사) 통관검사1과, 통관검사3과	☎ 032-452-3288
	수입3과	○ (이사화물) 통관검사2과 ○ (특송화물) 통관검사5과	☎ 032-452-3181
	통관지원2과	○ 신항통관과	☎ 032-452-3690
경인항	통관지원1과	○ 통관검사3과(인천터미널) ○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김포터미널)	☎ 032-452-3288 ☎ 02-8330-4921
인천 공항	수입1과	○ (P/L) 통관정보과 ○ (심사·검사) 통관검사1과	☎ 032-722-4211
	수입2과	○ (심사·검사) 통관검사2과	☎ 032-722-4262
부산항	수입과	○ (P/L) 통관총괄과 ○ (심사·검사) 통관검사4과	☎ 051-620-6211
	부두통관1과	○ (심사·검사) 통관검사3과	☎ 051-620-6253
	부두통관2과	○ (심사·검사) 통관검사1과, 통관검사2과	☎ 051-620-6261
부산 신항	신항수입과	○ (P/L) 신항통관감시과 ○ (심사·검사) 신항통관검사2과, 신항통관검사3과	☎ 051-620-6152
	신항부두통관과	○ (심사·검사) 신항통관검사1과	☎ 051-620-6282
서울	수입과	○ 통관검사과	☎ 02-510-1151
평택	수입과	○ (P/L) 통관총괄과 ○ (심사·검사) 통관검사1과	☎ 031-8054-7051

▶ [별첨 ②] 수입업무 보세구역별 통관부서 변경표

□ 수출신고 및 수출신고 관련 업무(신고 정정·취하, 간이통관 등)

구 분	개편 이전	개편 후	문의처
인천항	인천항수출과	항만통관검사4과 ·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수출업무 모두 담당	☎ 032-452-3239
	인천항 통관지원1과 (경인항 수출업무)		
	인천항통관지원2과	신항통관과	☎ 032-452-3652
인천공항	공항수출과	공항통관검사3과	☎ 032-722-4191
부산항	수출과	통관검사5과	☎ 051-620-6171
부산신항	신항통관지원과	신항통관검사3과	☎ 051-620-6191
서울	수출과	통관검사2과	☎ 02-510-1142
대구	통관지원과	통관지원과	☎ 053-230-5222
광주	통관지원과	통관지원과	☎ 062-975-8042
평택	통관지원과	통관검사과	☎ 031-8054-7026

▶ [별첨 ③] 수출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 기타 관할 변경사항

※ **용당세관 관리대상화물 관할**

- 용당세관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관리대상화물에 대해서는 부산세관 통관검사1과에서 관리대상화물 검사 및 수입심사, 검사업무 처리합니다.
- 다만, 용당세관 관할 태원월드체인 냉동창고로 반입되는 관리대상화물은 부산세관 통관검사1과에서 관리대상검사를 담당하고 수입신고 등은 용당세관에서 처리

※ **경인항 관련 관할 변경**

- ① 경인항 인천터미널 소재 보세창고 : 담당부서 변경  
- [개편 전] 인천세관 경인항지소(01) ⇨ [개편 후] 인천세관 항만수출입물류과(D8)

(총 10개소) 02006058, 02006096, 02011028, 02007022, 02012012, 02086011, 02006024, 02010044, 02011029, 02088022

- ② 경인항 김포터미널 보세창고 : 관할세관 및 담당부서 변경, 보세구역후보 유지  
- (개편 전) 인천세관 경인항지소(02 01) ⇨ (개편 후)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041 D9)

(총 9개소) 02006073, 02006054, 02011032, 02003081, 02006040, 02006072, 02006061, 02006062, 02006032

· 다만 경인항 수출업무는 인천-김포터미널 모두 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4과에서 담당

**2** 보세구역 및 화물관리 업무

□ 화물 반출입 · 보세운송

구 분	개편 이전	개편 후	문의처
인천항	인천항 동관지원1과	항만수출입물류과	☎ 032-452-3227(반출입) ☎ 032-452-3214(보세운송)
	인천항 동관지원2과	신항통관과	☎ 032-452-3653
인천공항	공항통관지원과	공항수출입물류과	☎ 032-722-4146(반출입) ☎ 032-722-4131(보세운송)
	공항감시과	공항물류감시1과	☎ 032-722-4734 (T1 면세·유치품) ☎ 032-722-4735 (T1 내국물품 반출입)
	공항감시관	공항물류감시2과	☎ 032-722-5814(T2)
서울	동관지원과	동관지원과	☎ 02-510-1111
부산항	동관지원과	수출입물류과	☎ 051-620-6121(반출입) ☎ 051-620-6132(보세운송)
부산신항	신항동관지원과	신항동관감시과	☎ 051-620-6235
대구	동관지원과	동관지원과	☎ 053-230-5218
광주	동관지원과	동관지원과	☎ 032-975-8043
평택	동관지원과	물류감시과	☎ 031-8054-7082

▶ [별첨 ④-1, ④-2, ④-3] 화물 및 물류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3** 입출항(선박용품 등) · 하선하기 · 적하목록 관련 업무

□ 해상 입출항 관련 업무(선박용품, 국제항의 출입, 승선, 항의하역)

구 분	개편 이전	개편 후	문의처
인천세관	감시총괄과	항만물류감시1과	☎ 032-452-3551
	인천항감시과	항만물류감시2과	☎ 032-452-3486
서울	동관지원과	수출입물류과	☎ 02-510-1111
부산항	감시총괄과	물류감시과	☎ 051-620-6769
	감시1관	물류감시1관	☎ 051-620-6801
부산신항	감시총괄과	신항물류감시과	☎ 051-620-6241
	감시1관		
평택	감시과	물류감시과	☎ 031-8054-7230

※ 부산항·부산신항은 선박의 집안장소에 따라 담당부서가 다름

※ 인천항 상시승선신고 : 항만물류감시1과(☎ 032-452-3475)

▶ [별첨 ⑤-1, ⑤-2] 공항만 감시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 ※ 부산세관 신항 입출항·적하목록 관련 변경사항

## ※ 부산세관 입항적하목록 제출처 변경내역

입항항구	조직개편 전		조직개편 후	
	양륙항부호	신고과(부호)	양륙항부호	신고과(부호)
북항, 남항	KRPUS	동관지원과(10)	KRPUS	수출입물류과(D8)
감천항			KRKCEN	
신항			KRBNP	신항통관감시과(D1)

\* 조직개편 후에는 입항적하목록 신고과(부호 : D8, D1) 외에는 오유치리

## ※ 부산세관 신항 ↔ 북항, 남항, 감천항 간 항내 이동선박 주의사항

## ① 적하목록 제출부서

- 가장 먼저 입항하는 항구 기준으로 양륙항 기재 및 담당부서에 적하목록 제출
- \* 검사대상화를 선별은 적하목록 접수부서 기준으로 처리

## ② 하선신고 및 결과보고

- 하선장소별 관할부서에 신고
- \* 신항은 "D1(신항통관감시과)", 북항·남항·감천항은 "D8(수출입물류과)"

이주의  
초점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이주의  
초점

적하목록 정정 및 하선·하기 신고

구 분	개편 이전	개편 후	문의처
인천항	인천항 통관지원1과	항만수출입물류과	☎ 032-452-3215
인천공항	공항통관지원과	공항수출입물류과	☎ 032-722-4131
서울	통관지원과	통관지원과	☎ 02-510-1111
부산항	통관지원과	수출입물류과	☎ 051-620-6721
부산신항		신항통관감시과	☎ 051-620-6231
대구	통관지원과	통관지원과	☎ 053-230-5218
광주	통관지원과	통관지원과	☎ 062-975-8043
평택	통관지원과	물류감시과	☎ 031-8054-7074

▶ [별첨 ④-1, ④-2, ④-3] 화물 및 물류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내국물품 관련 업무(원양어획물 하선작업 신고·정정 등)

구 분	개편 이전	개편 후	문의처
인천항	감시총괄과	항만물류감시1과	☎ 032-452-3475
부산항	감시총괄과	물류감시과	☎ 051-620-6764
부산신항	감시총괄과	신항물류감시과	☎ 051-620-6251
평택항	감시과	물류감시과	☎ 031-8054-7230

▶ [별첨 ⑤-1, ⑤-2] 공항만 감시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항공 입출항·항공기용품 하역 신청 관련 업무

구 분	개편 이전	개편 후	문의처
인천 공항	제1터미널	공항감시과	공항물류감시1과 ☎ 032-722-4744
	제2터미널	공항감시관	공항물류감시2과 ☎ 032-722-5824
대구	휴대품과	여행자통관과	☎ 053-230-5520
광주	휴대품과	여행자통관과	☎ 062-975-8211

▶ [별첨 ⑤-1, ⑤-2] 공항만 감시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

## 기타

## 4 특송·이사화물·여행자유대품 통관

특송물품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구 분	개편 이전	개편 후	문의처
인천항	인천항수입3과	항만통관검사5과	☎ 032-452-3273
인천공항	특송통관1과	특송통관1과	☎ 032-722-4306
	특송통관2과	특송통관2과	☎ 032-722-4825
	특송통관3과	특송통관3과	☎ 032-722-5202
	특송통관4과	특송통관4과	☎ 032-722-5243
평택	수입과	통관검사1과	☎ 031-8054-7090
용당	통관지원과	통관지원과	☎ 051-793-7143
김포공항	통관지원과	통관지원과	☎ 02-6930-4912

▶ [별첨 ⑥] 특송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이사화물 통관

※ 이사물품 통관 안내 : 빈입한 공항만 세관 지정장치장 관할에 따라 이사물품 신고 가능

구 분	개편 이전	개편 후	문의처
인천	인천항수입3과	항만통관검사2과	☎ 032-452-3545
서울	이사화물과	이사화물과	☎ 02-510-1187
용당	통관지원과	통관지원과	☎ 051-793-7134
대전	통관지원과	통관지원과	☎ 042-717-2234

▶ [별첨 ⑥] 이사화물 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이주의  
초점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

## 기타

## □ 여행자휴대품 통관

구 분	개편 이전	개편 후	문의처
인천공항	공항휴대품1과	공항여행자동관1과	☎ 032-722-4413
	공항휴대품2과	공항여행자동관2과	☎ 032-723-5113
	공항휴대품검사관	공항여행자동관검사관	1터미널 ☎ 032-722-4523 2터미널 ☎ 032-723-5171
인천항	인천항휴대품과	항단여행자동관과	☎ 032-722-5970
김포공항	휴대품과	여행자동관과	☎ 02-6930-4974
김해공항	휴대품과	여행자동관과	☎ 051-899-7242
대구	휴대품과	여행자동관과	☎ 053-230-5531
광주	휴대품과	여행자동관과	☎ 062-975-8217
청주	휴대품과	여행자동관과	☎ 043-717-5751
제주	휴대품과	여행자동관과	☎ 064-797-8834
속초	조사심사과	조사심사과	☎ 033-820-2146
부산항	휴대품과	여행자동관과	☎ 051-620-6733
평택	휴대품과	여행자동관과	☎ 031-8054-7279
군산	조사심사과	조사심사과	☎ 063-730-8736

▶ [별첨 ⑦] 휴대품 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 5 납세신고·환급 및 성실신고 지원

## □ 납세신고 변경(보정·수정·경정) 및 환급

구 분	개편 이전	개편 후	문의처
인천	심사정보과	변경 없음	☎ 032-452-3312
서울	심사정보과	변경 없음	☎ 02-510-1212
부산	심사정보과	변경 없음	☎ 051-620-6311
대구	납세심사과	납세지원과	☎ 053-230-5354
광주	납세심사과	심사과	☎ 062-975-8173
평택	납세심사과	심사과	☎ 031-8054-7112

## □ 관세도움정보(성실신고 안내)

구 분	개편 이전	개편 후	문의처
인천	심사총괄과	심사정보1과	☎ 032-452-3312
서울	심사정보과	심사정보과	☎ 02-510-1323
부산	심사관	심사정보과	☎ 051-620-6311
대구	납세심사과	납세지원과	☎ 053-230-5354
광주	납세심사과	심사과	☎ 062-975-8173
평택	납세심사과	심사과	☎ 031-8054-7117

## 6 환전영업 관련 업무

## □ 환전영업자의 등록·변경·폐지·신고

개편 이전	개편 후	문의처
인천세관 외환조사과	인천세관 조사2관	☎ 032-452-3447

**7 AEO, 원산지(C/O) 발급, 원산지 사전심사 등, 인증수출자 관련 업무**

□ 수출입안전관리 공인업체 AM

구 분	개편 이전	개편 후	문의처
인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심사총괄과	☎ 032-452-3312
서울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심사총괄1과	☎ 02-510-1212
부산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심사총괄과	☎ 051-620-6311
대구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통관지원과	☎ 053-230-5354
광주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통관지원과	☎ 062-975-8173

□ FTA 원산지증명서(C/O) 발급 및 인증수출자 신청

구 분	개편 이전	개편 후	문의처
인천	자유무역협정1과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100
서울	자유무역협정4과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880
부산	자유무역협정과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61
대구	자유무역협정과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91
광주	통관지원과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054
평택	통관지원과	심사과	☎ 031-8054-7111

□ 원산지 사전심사 및 원산지 판정

개편 이전	개편 후	문의처
관세평가분류원	관세청 원산지검증과	☎ 042-481-3285
관세청 특수통관과		

**붙임 1 전자문서 이관 확인을 위한 별첨자료 리스트**

※ [별첨 ①] 전자문서 총괄표에서 신고할 전자문서별 이관표(②~⑫)를 확인한 후 해당되는 별첨자료를 열어 업무담당 부서명·과코드 변경내역을 확인

㉔ 부산세관 신항에서 보세운송신고를 하려는 경우

1. 별첨 ①을 열어 '서식명'에서 '보세운송신고서(GOVCBR031)' 확인  
(→ 적용서식 : 4-2 화물 및 물류 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2)
2. 별첨자료 중 '4-2. 화물 및 물류 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2'를 열어 부산세관 신항 보세운송 업무부서 변경 확인(신항통관지원과② → 신항통관감시과⑩)
3. 변경된 부서명(신항통관감시과)과 과코드(D1)에 맞도록 보세운송 신고

## &lt; 별첨자료 리스트 &gt;

- ① 전자문서 총괄표
- ② 수입업무 보세구역별 통관부서 변경표
- ③ 수출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 ④ 화물 및 물류 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 ④-1 화물 및 물류 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1(적하목록, 하선·하기신고 등)
  - ④-2 화물 및 물류 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2(화물 반출입, 보세운송, 보수작업 등)
  - ④-3 화물 및 물류 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3(보세판매장)
- ⑤-1 공항만 감시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 ⑤-2 공항만 감시업무(부산세관) 전자문서 이관표
- ⑥ 특송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 ⑦ 휴대품 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 ⑧ 이사화물 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 ⑨ 까르네 업무 전자문서 이관표
- ⑩ 우편물 수입신고목록
- ⑪ 차량일시수출입 신고서
- ⑫ 관세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서

**볼 임 2** 통관·감시 업무 관련 FAQ

**Q 수입정정** 개편 시행('21.3.30.) 이전에 인천항 수입1과로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개편 시행 이후에 수입신고 정정을 해야 하는데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별첨 ②] 자료를 보시면, 업체별·보세구역별 신고대상 부서와 변경된 과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부서로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예) 조직개편 시행 이전에 선관종합물류(부호 02012001) 보세항고를 관할하는 인천항 수입1과(11)에 수입신고한 경우, [별첨 ②] "통관부서별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명(부호)를 검색하여 확인되는 개편 후 부서인 통관검사1과(C1)로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Q 수출정정** 개편 시행('21.3.30.) 이전에 부산세관 수출과로 수출신고를 했습니다. 개편 시행 이후에 수출신고 정정을 해야 하는데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별첨 ③] 자료를 보시면, 수출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과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된 부서로 정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수출검사** 개편 시행('21.3.30.) 이전에 서울세관 수출과로 수출신고하고 적제지검사 대상으로 선별되었습니다. 개편 시행 이후에 부산항에서 적제할 예정인데 적제지검사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개편 시행 이후에 적제지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개편 시행 이후 변경된 수출업무 담당부서로 적제지검사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경인항** 경인항 김포터미널에 위치한 업체의 경우, '21.3.30. 이후에 보세구역 부호도 현재의 020으로 시작하는 부호에서 041으로 바뀌나요?

**A** 아닙니다. 경인항 김포터미널에 위치하는 10개 업체의 부호는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향후 특허 갱신 시, 갱신 업무는 김포공항세관에서 담당하게 되며, 갱신 시 041로 시작하는 부호로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적하목록** 개편 시행('21.3.30.) 이후 부산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할 때 양륙항부호 및 신고과부호가 맞지 않을 경우 적하목록이 접수되지 않나요? (예 : 신항에 양륙하고, KRPUS D1으로 신고)

< 개편 전후 양륙항·신고과 부호 변경내역 >

입항항구	조직개편 전		조직개편 후	
	양륙항부호	신고과(부호)	양륙항부호	신고과(부호)
북항, 남항	KRPUS	통관지원과(10)	KRPUS	수출입물류과(D8)
감천항			KRKCEN	
신항			KRBNP	신항통관감시과(D1)

**A** 양륙항부호가 적정한지에 대한 오류검증은 별도공지 시까지(4월 예정)까지 잠정유예합니다. 다만, 신고과 부호의 경우에는 수출입물류과(D8), 신항통관감시과(D1) 외의 부호로 제출하실 경우 오류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선박용품 적재 등 감시** 개편 시행('21.3.30.) 이전에 부산세관 감시1관실 및 감시총괄과에서 입출항, 선박용품 적재 등 및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에 대하여 수리(허가)를 받았습니다. 개편 시행 이후에 수리(허가) 받은 민원 업무에 대한 정정(취소), 이행착수(완료) 보고는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A** [별첨 ⑤-1-⑤-2] 자료를 보시면, 민원업무별 신고대상 부서와 변경된 과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박 입출항지를 '남항·북항·감천항 및 해상정박지'와 '신항 및 해상정박지'로 구분하여 신고대상 부서가 달라지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업무의 부서로 신청·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 (예) 부산세관 관할의 선박 입항보고 수리-정정 업무를 예로 들면, 개편('21.3.30) 전에는 감시1-4관에 신청하면 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남항-북항-감천항 및 해상정박지에 대한 업무처리는 물류감시1-3관(前 감시1-3관)에, 신항 및 해상정박지에 대한 업무처리는 신항물류감시과(前 감시4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 Customs Focus

JOYANG  
CUSTOMS  
SERVICE CORP.



※ 자료 출처 : 관세무역정보,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등

